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	:	2003. 10. 1.
개정	:	2005. 8. 16.
개정	:	2010. 1. 1.
개정	:	2013. 9. 1.
개정	:	2015. 9. 1.
개정	:	2016. 3. 1.
개정	:	2017. 6. 20.
개정	:	2018. 5. 21.
개정	:	2019. 11. 25.
개정	:	2021. 12. 17.
개정	:	2024. 1. 12.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 일반전임교원에 적용하며, 강의전담교원과 연구전임교원(HK교수 포함, 이하 “연구전임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조(목적) 교원업적평가는 일반전임교원(교육형)과 연구전임교원(HK교수 포함, 연구형)의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시키며 사회에 대한 활발한 기여를 모색하게 하여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일반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교원은 따로 정한다.

②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포상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제4조(평가업적) 교원의 업적은 수업 및 학생지도 등의 교육업적,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연구업적, 본 대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봉사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5조(평가원칙) ① 삭제

② 교원업적평가는 정기업적평가와 수시업적평가로 한다. 정기업적평가는 학년도 기준(학년도 개시일부터 학년도 종료일까지)으로 평가하며, 수시업적평가는 필요시 실시하며 그 기준일은 8월 말일이 된다.

③ 재임용에 따른 법정기일 준수를 위하여 정기업적평가와 수시업적평가의 평가일과 항목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일 : 임용 종료일 3개월 전

2. 평가항목별 적용 : 평가일 기준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되 반영이 불가능한 항목은 차기 업적평가에 반영

④ 교원 및 행정부서에서는 교원업적평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교원의 경우 본 대학교에서 연구실적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설립목표 실현과 교원특성화-유형)** ① 본 대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교원업적평가 시스템과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교원업적평가는 평가유형을 교육형과 연구형으로 나누어 일반 전임교원은 교육형으로, 연구전임교원(HK교수 포함)은 연구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 유형별, 업적 분야별 연간 최소점수〉

[단위: 점, (%)]

교육형				연구형			
교육	연구	봉사	소계	교육	연구	봉사	소계
480	200	120	800	280	400	120	800
(60)	(25)	(15)	(100)	(35)	(50)	(15)	(100)

- 제5조의3(업적평가 시 업적분야별 실적 대체 인정)** ① 교원은 제5조의2의 분야별 최소점수를 각 업적별로 충족하여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대상이 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6조(평가기구)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 제7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전체의 교원 업적평가를 담당한다.
- ② 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된다.

제8조(학부평가위원회)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제9조(학술지 인정등급 등록)** ① 각 학부장은 교원인사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 학술지 인정등급표([별표 1])를 작성하여 교원인사 부서에 제출한다.
- ② 위원회는 학부교수회의에서 제출한 학술지 인정등급 결과를 심사하여 등록을 확정한다.

- 제10조(평가절차)** ① 정기업적평가의 경우 매년도 12월 초에, 수시업적평가의 경우 매년도 6월 초에 평가에 필요한 항목별 평가표(지정서식) 작성을 해당 교원과 해당 부서에 요청하여 교원별 점수를 산정한다. 점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산정된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 ③ 삭제

- ④위원회는 각 교원에 대한 최종평가점수를 확정한다.
- ⑤교학지원처장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재심신청) ①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교원은 평가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소명자료 첨부)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7.>
 ②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자가 있을 경우 총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해 재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17.>

제3장 교원업적 분야별 평가

제12조(교육업적 평가) ① 교육업적은 학기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② 교육업적의 평가항목은 담당강의, 수업평가, 학생지도로 구분하며 항목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항목	산정기준	비고	
①담당강의	㉠책임시수 준수	(주당 강의시수 - 책임시수)×50점	점수상한 없음
	㉡공동강의(팀티칭)	(주당 강의시수 ÷ 담당 교원 수)×50점	
	㉢휴·보강	-40점×미보강 시수	
	㉣계절학기 수업 (비교과프로그램 포함)	계절학점×50점	
②수업평가	㉦강의평가 결과	담당 강좌별 산출하여 평균점으로 계산 100점 - {(4점-강의평가점수)×100점}	
③학생지도	㉧학생상담	학생상담 규정 미준수 = -5점×해당 사례 수	
	㉨Office Hour	담당 강좌별 산출 = 100점 - {(4일 - 주당 평균 출강일수)×100점}	
	㉩학위 논문 지도	학생 학위논문 지도 = 20점×학위수여자 수(석사 및 박사)	
※ ①담당강의 내 ㉡공동강의(팀티칭)를 실시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동일한 점수 부여 ※ ①담당강의 내 ㉣계절학기 수업 관련 강의료는 관련 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③학생지도 항목의 경우 전산에 입력된 자료에 한하여 산출 ※ ③학생지도 내 ㉨Office Hour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면담시간(Office Hour)을 별도 기재 후 연구실 출입문에 면담시간을 공지하여야 하며, 실제 운영여부는 연구실 출입기록으로 확인			

- ③ 교원이 연구년, 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학기당 기본시수를 인정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휴가, 휴직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담당강의 항목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수업을 모두 포함한다.

제13조(연구업적 평가) ① 연구업적은 정기업적평가의 경우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수시업적평가의 경우 학기단위로 평가한다. 다만, 연구실적은 매 실적 발생(게재 등)후 1개월 이내에 본 대학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매년 전체 연구실적 합산 추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업적의 평가는 학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학부가 없는 소속 교원은 전공과 부합되는 분야에서 평가한다.

③ 연구업적의 분류 및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세부기준		산정기준
① 학술논문	㉔국내 및 외국학술지 논문	(1) 저명	① SCI, SSCI, A&HCI, SCIE, SCOPUS 등에 등재된 학술지 ② 인정점수는 400점, SCIE 및 SCOPUS는 300점 ③ 자연계 전공교원 인정점수는 200점(SCIE 100점)
		(2) 전국 규모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는 각 학문분야별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타 학술지 ③ 인정점수는 등재지 200점, 등재 후보지 및 국제인정기타학술지 100점 ④ 삭제
		(3) 기타	① 대한불교천태종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교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포함) 및 불교학과외 교원들이 종단 정책사업에 참여한 보고서(천태종 복지사업, 종단 번역사업(영어, 중국어, 일본어)) 제출시 200점 ② 심사제도를 갖춘 학술단체에서 연2회 이상 발행하는 학술지로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는 기타로 분류되는 학술지 50점
② 학술저작	저작이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서적, CD 등)을 말하며, 동일 제목의 저서는 배출권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한다.		
	㉔학술저서	(1) 전문 학술 저서	① 전공 및 교양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저서로서 대학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② 관련 전공 및 교양분야 교수의 3인 추천이 있어야 하며, 인정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③ 인정점수는 400점 ④ 개인 논문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불인정 ⑤ 초판에 한함 ⑥ 개정판의 경우 초판 인정점수의 25% 인정
		(2) 일반 학술 저서	① 전공 및 교양분야 학부생을 위한 대학 교재용 학술서와 전문학술저서 요건에 미달하는 학술저서를 말한다. ② 인정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③ 인정점수는 200점 ④ 초판에 한함 ⑤ 개정판의 경우 초판 인정점수의 25% 인정
	㉔교과서	(1) 중등 교과서	① 교육부 검인증 교과서 ② 인정점수는 100점. 다만, 외국어로 출간한 경우에는 인정점수의 150%를 인정 ③ 초판에 한함 ④ 개정판의 경우 초판 인정점수의 25% 인정
㉔번역서		① 국내 및 외국 저작의 외국어 번역서 ② 인정점수는 위원회에서 논의함 -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시 · 300페이지 이상 : 400점 · 200페이지 이상 300페이지 미만 : 300점 ·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미만 : 200점 · 100페이지 미만 : 100점 -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시 점수에서 각각 50점씩 감한다. ③ 본인의 저작 번역서는 평가점수의 50% 인정	

④ 연구업적의 실적 분류에 따른 인정환산율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동일한 제목의 연구업적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학술회의에 발표한 논문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목의 연구업적을 평가년도를 달리하려 중복 인정받는 경우 해당업적에 대한 평가 점수를 제외한다.
3. 모든 연구업적은 전공 및 교양분야에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공동저자인 경우 1인 연구 100%를 기준으로 다음을 따른다.
 - 가. 2인 공동연구 : 주저자 또는 책임저자(교신저자) 70%, 공동저자 50%

나. 3인 공동연구 : 주저자 또는 책임저자(교신저자) 50%, 공동저자 각 30%

- i. 삭제
- ii. 삭제
- iii. 삭제

다. 4인 공동연구 : 주저자 또는 책임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100×(1/인원 수)}%

5. 삭제

⑤ 교내 보직 교원의 연구업적점수는 재임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보직월수 계산은 15일 미만의 경우 보직월수에서 제외함)

1. 처장(부처장), 대학원장, 기획평가단장 보직: 50%*보직월수÷12
2. 기타 보직(학부장, 연구소장, 기초교양교육원장, 대외협력단장, 부속부설기관장, 대학원학과장, 전공주임(학과장)): 25%*보직월수÷12
3. 제2호의 보직 중 2개 이상을 겸직한 교원의 경우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⑥ 삭제

⑦ 국제저명학술지(SCI급)에 등재한 교원은 업적평가 점수 이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봉사업적 평가) ① 봉사업적은 연 단위(전년 3월 1일부터 당해 년 2월 말일까지)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점수의 합계는 연간 120점까지 인정한다.

② 교내봉사는 본 대학교의 보직 또는 특별히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봉사하는 업적을 말한다. 다만, 보직의 경우는 봉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외봉사는 평가기간 중 6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 인정한다.

④ 봉사업적의 평가항목분류 및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 12.>

평가항목		산정기준	점수
①교내 봉사	㉓보직수행	(1) 처장(부처장), 대학원장, 기획평가단장	60점×보직월수/12
		(2) 기타 보직(학부장, 연구소장, 기초교양교육원장, 대외협력단장, 부속부설기관장, 대학원학과장, 전공주임(학과장))	40점×보직월수/12
	㉔위원회 참여	(1) 특별위원회 위원(대학평가 및 국고지원사업 제안서 등)	건당 30점
		(2) 교내 규정상의 각종 위원회	건당 15점
	㉕행사 참여	전체교수회, 시무식, 입학식, 학위수여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직장윤리교육	-20점×불참건수
	㉖재능기부	(1) 동아리지도(교내 학생단체로 등록된 동아리)	최대 20점
		(2) 고시반 및 자격증반 지도	최대 30점
		(3) 고등학교 진로특강	건당 20점
	㉗입시지원	(1) 출제, 감독, 면접, 채점 등	건당 10점 (연 최고 30점)
		(2) 입시홍보, 입시상담, 고교방문 참여	5점/1일(참가) -5점/1일(불참)
㉘산학연 활동	산학연 협동 협약(MOU) 체결, 국내·외 교육 관련기관(대학교, 연구소 등) 교류 실적	건당 20점	
㉙사회봉사	우리 대학교 주관 사회봉사프로그램	건당 10점	

3-2-3 교원 업적평가 규정

㉔항목 내 고등학교 진로특강과 ㉕항목 내 입시홍보, 입시상담, 고교방문 참여의 경우 별도의 결과보고서나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산출			
②교외 봉사	㉗ 국내외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활동(임원, 편집위원 등)	(1) 인근지역기반 학회 및 학술단체(학술회의의 경우 학술발표 연 6점, 논평 연 5점, 좌장 연 4점 중 1개만 인정)	연 8점
		(2) KCI 등재지	연 10점
		(3) SCI(E), SSCI, A&HCI, SCOPUS 등 저명 국제학술지	연 20점
	㉘ 국제기구 지원활동(임원, 자문위원 등)		연 20점
	㉙ 국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원활동		연 20점
	㉚ 전국단위 국가, 대학, 기관, 학술·봉사상		연 30점
	㉛ 지자체 및 사회단체 봉사활동(4시간 이상)		연 10점
③재정 기여	㉜ 기금유치 실적	(1) 5,000,000원 이상	연 20점
		(2) 500,000원 당	연 2점

제14조 1(교육개선업적 평가) 삭제

제15조(기타업적 평가) 삭제

제15조 1(대학전략과제 평가) ① 교원은 건학이념 실현과 종립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대학전략과제 목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산정기준	비고
①교육여건개선	㉕신입생 충원율(정원내)	50 - {100-(학부별 신입생 충원률)}	
	㉖중도 이탈율 (자퇴, 제적, 휴학)	50 - 5×학부별 중도 이탈률	군휴학 제외
	㉗취업률 제고	50 - (100 - 학부별 취업률)	
②종립대학 정체성 확립	㉘불교학 기초교리 이수	(1)일반교원 - 대학이 정한 불교학 기초교리(불교의 이해 등) 교육 이수: 참여시 25점 (2)불교학전공 교원 - 대학이 정한 불교학 기초교리(불교의 이해 등) 교육 진행: 참여시 25점	
	㉙종단 관련 행사 참여	전체 교직원 대상 종단관련 행사(교직원법회, 대조사탄신일 및 열반제, 구인사참배(정초), 구인사 교원 연수 등): 15점×건수	
① 교육여건개선 항목의 경우 교원이 소속된 학부(과) 기준으로 산출			
② 종립대학 정체성 확립 내 ㉙종단 관련 행사 참여의 경우 개인적 또는 특정학과 단위로 참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않음			

② 대학전략과제 평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에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성과급 지급 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가. 제13조 연구업적 평가 ③항 연구업적평가 및 인정점수 ①학술논문 분야의 국내 및 외국학술지 논문 중 전국규모 ①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포함)의 기준년도는 2012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12조(교육업적 평가) ②항 및 제14조(봉사업적평가) ④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교수업적은 해당 업적별로 그 완성기간에 적용하던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7조의②, 제9조, 제10조의①, 제10조의②, 제12조의①, 제12조의②, 제12조의④, 제13조의①, 제13조의③, 제13조의④, 제13조의⑤, 제13조의⑥, 제13조의⑦, 제14조의①, 제14조의④, 제14조의1, 제15조, 제15조의 1, 제16조, 별표2)

2.(경과조치) 기 임용된 교원의 경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 개정규정을 재임용 평가 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술지 인정등급표								
학부					전공			
1. 국내 및 외국 학술지								
순번	학술지명	발행기관	발행국	발행도	평균 수록 논문	활동 회원	세부분류 (저명, 전국, 기타)	등재정보

※ 등재정보란에는 SSCI, SCI 등의 정보(impact factor 등)를 기재한다.

※ 소속 교수 전원 서명

(별표2) 삭제